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83

발의연월일: 2022. 8. 17.

발 의 자:태영호·윤두현·김선교

김예지 · 김상훈 · 조명희

김석기 · 김미애 · 김도읍

이철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 속적·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2022년 8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2022년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4,014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29,299명으로 66.5%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조의2(이산가족의 날) ① 남
	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
	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20일을 이산
	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
	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